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177 호
2017년9월18일(월)

여수시보

시정방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263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3
- 여수시 고시 제2017-264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울림리) /7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1834호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8
- 여수시 공고 제2017-1838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공고 /28
- 여수시 공고 제2017-1842호 여수시 전통(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단장 모집공고 /29
- 여수시 공고 제2017-1848호 2017년도 낚시전문교육 일정 변경 안내 /38

회 판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장척마을 등 3개소 일원에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정 예정인 『노인 보호구역』 과 관련하여 설치 시행 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8.

여 수 시 장

1. 목적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장척마을, 율촌면 가장리 가장문화마을, 화양면 장수리 장수마을 내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을 지정 하고자 함.

2. 공고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us.go.kr>)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9.18. ~ 2017. 10. 7. (20일간)

4. 지정위치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여수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659-5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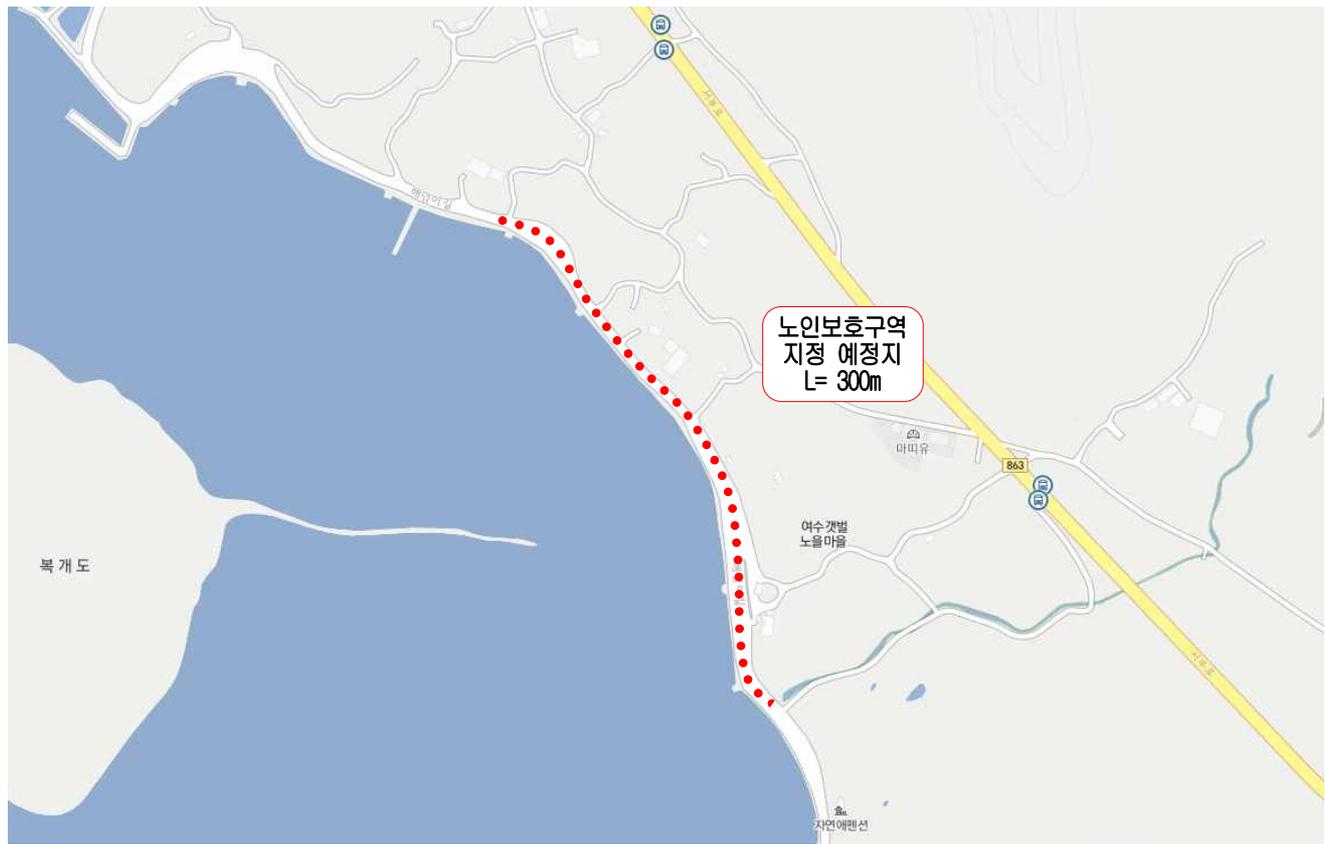
라. 보내실 곳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여수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61-659-5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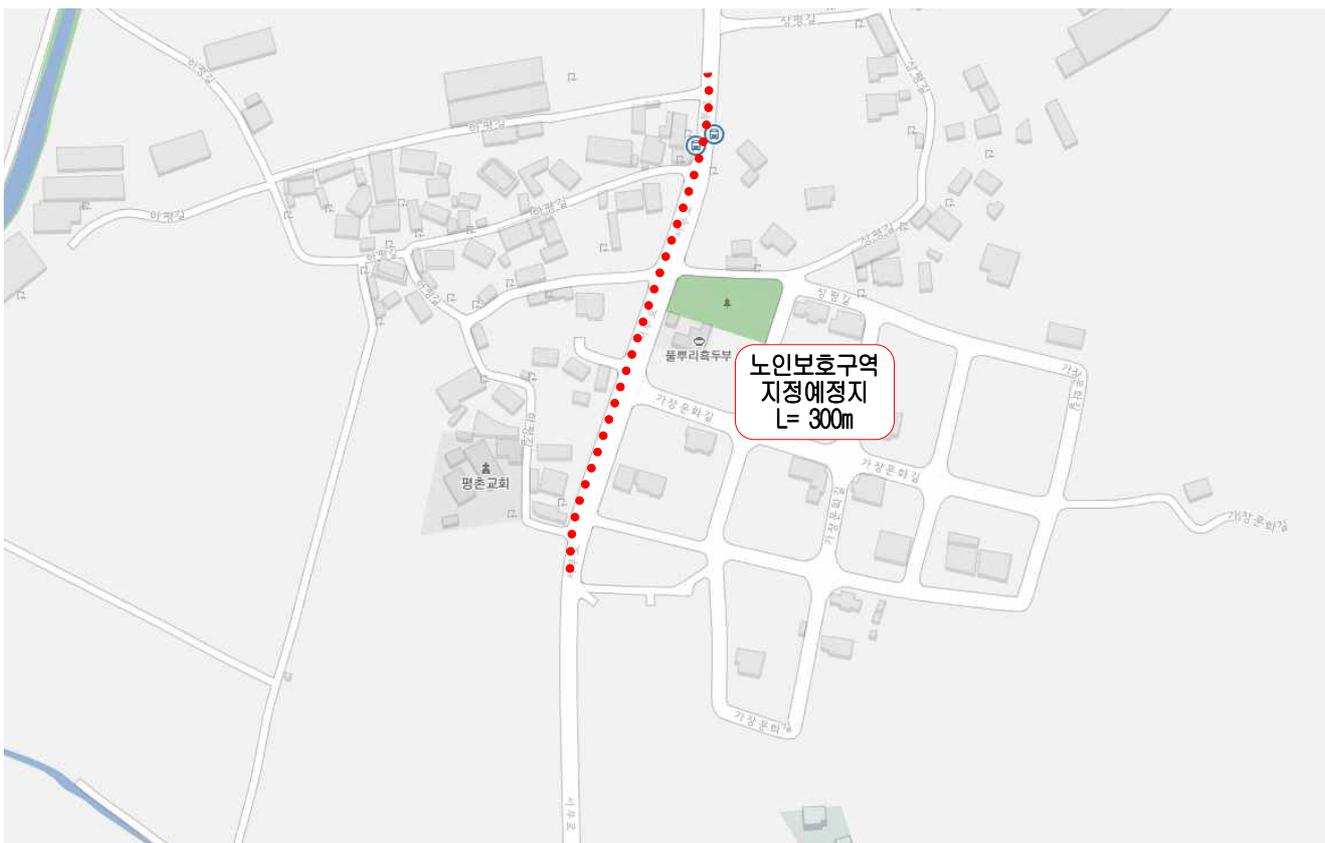
바.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

□ 시설명 : 장척마을 일원(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 시설명 : 가장문화마을 일원(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시설명 : 장수마을 일원(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유실수 재배
2. 사업의 내용: 개간 신청지(임야)를 농경지로 조성
3. 사업의 구역
 - 위 치: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산188-2번지
 - 대장면적: 4,903m²
 - 개간면적: 3,740m²
4. 사업비: 33,000,000원
5. 사업예정기간: 승인일 ~ 12개월 (2018. 9. 17.)
6. 사업의 효과: 유실수를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
7. 사업시행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304-1103
(상남동, 성원A) 박용희 외 3인

2017. 9. 18.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9 월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반영 및 중복내용 삭제
-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항(규칙 제정사항) 삭제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반영
 -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기(대부)을 허가(대부)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기간 갱신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세부내용 신설 및 변경
 - 해당 조문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0조의 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제22조의 3(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제32조의 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 제39조의 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40조의 2(교환차금의 납부)

· 제42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제49조의 2(여수시 건축위원회 심의)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내용 삭제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사항
- 기부채납의 원칙,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허가대상 및 기간 등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등
- 해당 조문

· 제2조(관리책임) : 법 제14조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법 제14조

· 제7조(실태조사) : 법 제44조

·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 제10조

·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 법 제7조 및 영 제5조

·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 법 제24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

· 제15조(무상사용기간) : 법 제21조제1항

· 제16조(부당한 조건배제) : 법 제7조제2항

· 제19조(사용·수익허가 기간) : 법 제21조

· 제22조제3항부터제6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 제21조

·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 영 제31조제6항

·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 조례에 정하는 법적근거 없음.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영 제31조제2항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 영 제14조 및 제32조

· 제35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 법 80조 및 영 제80조

· 제42조의2 제3호(매각의 제한) : 법 제36조 및 영 제37조의2

· 제43조(신탁의 종류) : 법 제42조

· 제43조의 2(위탁재산의 관리) : 법 제43조의 2

· 제43조의 3(개발제도) : 법 제43조의 3

· 제61조(변상조치) : 법령 위임근거 없음

· 제63조제2항,제3항(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영 제84조

· 제63조의 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

○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항(규칙 제정사항) 삭제

-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등
-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변상금의 분할 납부 등
- 대부정리부의 비치, 대부계약서 등

- 해당 조문

-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상),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7조(관리 및 처분)
-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제23조(연고권의 배제),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 제36조(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등), 제37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9조(대부계약서), 제41조(조성원가 매각)
- 제42조의 2(매각의 제한), 제45조(처분의 제한)
-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제64조(합필의 신청)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 입법예고기간

- 입법예고기간 : 2017. 9. 19. ~ 2017. 10. 10.(22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59675) 여수시 시청로 1, 회계과(학동)
- 받 는 사 람 : 여수시장(회계과장)
- 전 화 : 061)659-3217, 팩스 : 061)659-5808
- 이 메 일 : zephyrking@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수시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여수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의 경우
2. 1건당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취득 또는 처분 하는 경우
3. 1건당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 하는 경우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

항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 총괄하며,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1건당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2. 1건당 기준가격이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 동 지역에서는 7천만원 이하인 재산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당해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자문 또는 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5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공유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보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지방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유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재산

제7조(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13조제3항 제8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 특산품 또는 시에서 생산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시적인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인증을 받은 업소, 작업장 또는 농장 등에서 생산한 HACCP 적용 식품 또는 가공품
3.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인증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상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은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및 감면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100분의 70을 감액한다.

제10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

우에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위탁 수행실적(관리위탁 조건의 이행 여부 및 그 내용을 포함한다)
3. 재무구조의 안정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구비하도록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관한 사업계획서(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표시 포함)
2. 관리수탁자의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관리수탁자에 대한 신용평가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의11제3항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4. 그 밖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3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11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 특산품 또는 시에서 생산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시적인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인증을 받은 업소, 작업장 또는 농장 등에서 생산한 HACCP 적용 식품 또는 가공품 등

3.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인증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상품

제12조(대부료의 요율)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청사의 구내 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 또는 그 밖에 공익상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대부인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1.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단체·법인·기관 등에 대부하는 경우
 5.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 ④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13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100분의 70을 감액한다.

제14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100분의 75를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
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
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
재·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

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 ③ 영 제29조 제1항 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80퍼센트를 말한다.

제2절 매각

제1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 소유 토지(이하 “시유지”라 한다)의 위치, 형태, 규모 또는 용도를 고려할 때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단, 해당 시유지의 기준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폐도, 폐구거 또는 폐제방을 그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단, 해당 사유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그 폐도, 폐구거 또는

폐제방과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 제7호의3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시유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를 그 산업용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단, 산업용지와 동일한 시설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로서 해당 사유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산업용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4. 시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사유토지의 진·출입로 확보에 필요한 최소면적의 시유지를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2012년 12월 31일(법률 제12649호로 2014. 5. 21. 시행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을 말한다)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되고 있는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를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나.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매각하는 경우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읍·면지역의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하여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그 농지를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8. 투자유치 또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마을회 등 주민단체에게 해당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1,000제곱미터 이내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1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시유지를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시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여수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절 공유임야 관리

제18조(공유임야 관리) 시장은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재산

제19조(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 특산품 또는 시에서 생산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시적인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 작업장 또는 농장 등에서 생산한 HACCP 적용 식품 또는 가공품 등
3.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인증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상품

제5장 청사

제20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본청·사업소·읍·면·동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재원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정비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의 순서로 한다.

제21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청사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설계면적기준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종합청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의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6장 관사

제25조(관사의 구분) 관사(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직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제26조(사용허가) 관사를 사용하려는 시 공무원은 시장에게 관사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7조(관사사용자의 의무)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관사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
5. 관사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사사용료 및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28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시장은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2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관사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된 때
2. 관사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관사사용자가 제27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30조(관사사용료 등) ① 관사사용자는 관사사용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여야한다.
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를 사용하는 시장 및 부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사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 후 관사사용자에게 부과한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2조(비품의 관리) 시장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의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관사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 관사사용자는 그 날까지 발생한 관사사용료를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관사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사용료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장 보칙

제34조(변상금의 징수 유예)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영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제3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보상률은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최고금액은 600만원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공유재산에 대한 보상률은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5로 하고, 최고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②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11157	2017-37	패류양식 어업	5.75	돌산 평사	2007.12.10. 2017.12.09.	2017.12.10. 2027.12.09.	-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평사 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17. 9. 18.

여 수 시 장

여수시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단장 모집공고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수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할 사업단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전라남도 여수시장

□ 모집개요

- (모집대상) 사업기간동안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해당시장에서 전임으로 용역제공이 가능한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단장
 - *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기간 : '17. 9. ~ '18. 12.
- (역할) 사업단장으로서 공단 및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단원을 채용하여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신청 자격

- 사업기획 및 운영능력을 갖추고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 경영, 유통, 창업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등 관련 사업에 PM자격으로 수행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 현재 지원시장의 상인회장 등 임원은 신청불가
 - * 상인대학(점포대학) 내 강의, 연구진 참여 등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가 및 지자체 시행 “창업관련 사업” 등의 사업에 PM자격으로 수행경험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역량 및 자질을 갖추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자

- (모집인원) 여수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1명
- (접수기간) 2017. 9. 19.(화요일) ~ 2017. 9. 25.(월요일) 18시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경력기술서, 관련사업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 양식 참조)
- (제출방법)
 - 방 문 : 전남 여수시 여문2로 124, 여수시청 문수청사(지역경제과)
 - ※ 9. 25일 18:00까지 문서 접수분에 한함
 - 이메일접수(jhdw1357@korea.kr)
 - ※ 접수시 메일 제목란에 “[사업단장모집]성명”을 반드시 표기 바람
- (문의처) 여수시 지역경제과 ☎ (061)659-4548, 4535

□ 평가 및 계약

- (평가절차) 서류평가 → 면접평가를 통해 선정



- (서류평가) 전통시장 관련 분야의 경력, 학력, 유사사업 참여 경험 등 지원자에 대한 이력을 바탕으로 모집시장의 2~3배수 내외 선발
- (면접평가) 전통시장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이해, 청년몰 조성사업의 이해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수행능력, 문제해결, 태도 등을 평가하여 적임자 선정
- (최종선정) 서류, 면접 종합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 (용역계약) 최종 선정된 사업단장은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증기청으로부터 간접보조 사업자로 지정받고, 지자체, 공단은 간접보조사업자와 용역 계약 체결
- (교육) 보조금 관리, 조달계약, 청렴, 갈등관리, 사업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실시 (소진공)

□ 지원자 풀 운영

- 종합 평가점수 합산 순위에 따라 시장별 대기 후보자 풀 구성
 - 평가결과 후보 순위권(3위 이내) 내 지원자의 경우, 사업단장 중도 포기 발생시 차순위 기회부여

□ 향후 일정

- 서류평가발표 : 2017. 9. 27.
- 면접평가 : 2017. 9. 29. ※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 <붙임> 1. 사업단장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사업개요 1부. 끝.

사업단장 신청서

모집시장

사 진	인 적 사 항	성 명	연령(만)	세	
		생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E - mail			

현재소속	직장명		부서		직위	
------	-----	--	----	--	----	--

학 력 사 항	기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위 구분	졸업구분 <small>(중퇴/재학/ 수료/졸업)</small>
	00년 0월~00년0월	고등학교			-	
	00년 0월~00년0월	대학교			학사	
	00년 0월~00년0월	대학원			석사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	직위	주요업무
(고용 보험 가입 기준)	00년 0월~00년0월				

수 상	수상일자	수상기관	훈격	비 고

자 격 및 면 허	자격증명	급수	취득일	검정기관

* 최근 경력순으로 기재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제출된 이력과 경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인)

경력기술서

※ 본인의 경력을 기술해주세요(2P 이내로 작성할 것)

전통시장관련 경력 기술

기타 전문분야관련 경력 기술

관련사업 참여실적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문전성시, 서울시 신시장사업, 마을 기업사업 등을 중심으로 PM자격으로 참여한 사업을 작성바랍니다.

사업명	기간	지원기관	참여역할	주요내용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OO시장)	00년 00월~ 00년 00월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	사업책임자	

청년몰 조성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여수중앙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지원으로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청년몰 내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교육, 점포 임차료 및 인테리어 지원, 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
- (사업기간) 선정일 ~ '18.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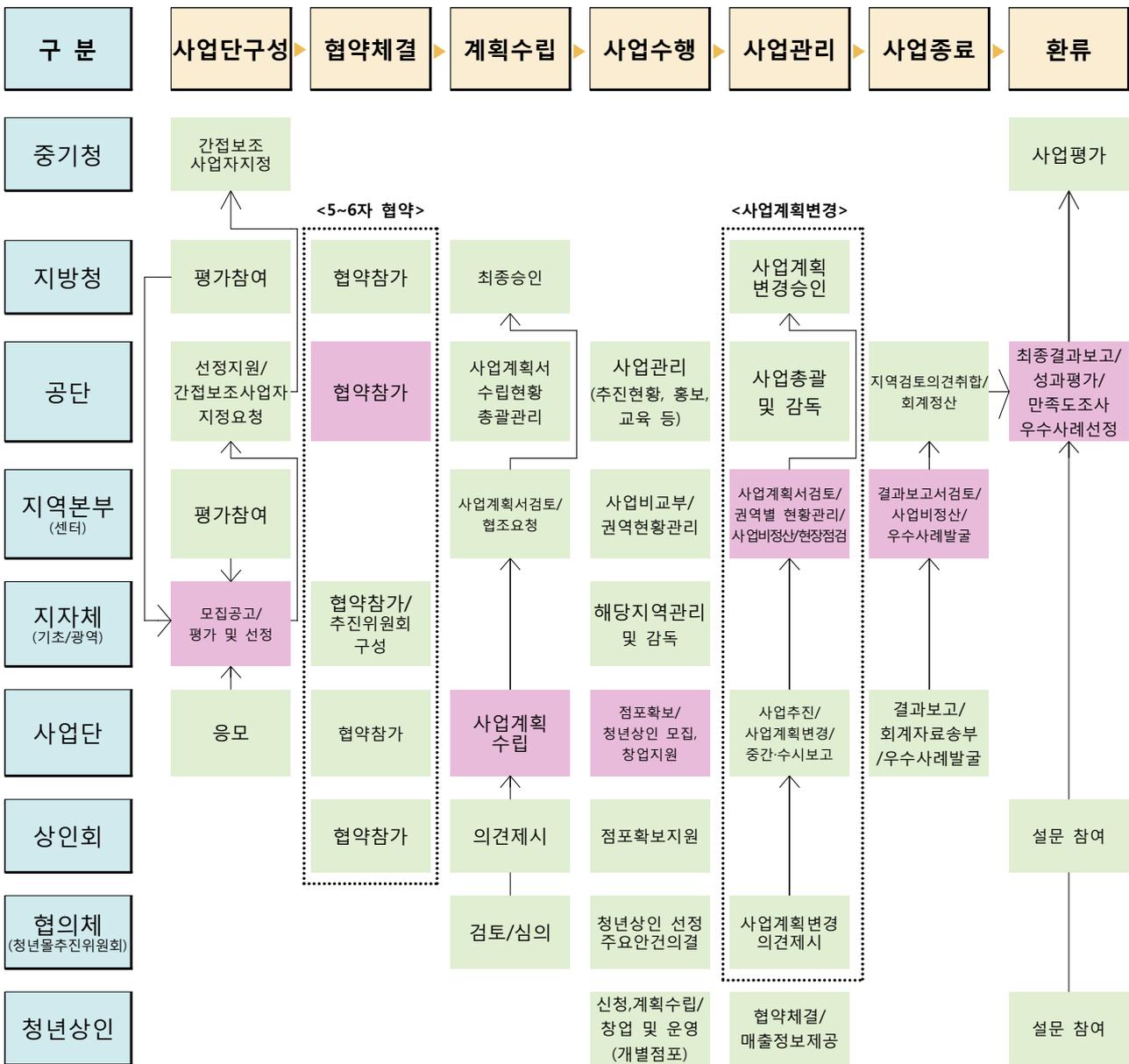
2. 주요내용

- (청년몰 정의) 시장 유휴공간과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의 융합 공간
 - ※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1,322㎡내외)을 활용,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입점한 점포 27곳**, 고객들을 위한 **휴게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Mall형태**로 조성한 곳
- (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 쇼핑과 지역문화, 젊은 감각 등이 융합된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
 - 청년몰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개선지원 및 청년몰의 기본컨셉과 청년상인 업종에 따른 특색을 갖추기 위한 디자인 중심의 기반조성 지원
 - * 청년몰 구역 바닥정비, 전기·수도·가스, 안정보강, 개별점포 인테리어, 임차료 등
 - 상권의 특장점이 반영된 감성 컨셉을 설정, 전통시장의 새 바람을 불어넣는 한편,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청년일자리 창출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다각지자체의 점포매입 및 장기임대* (5년이상), 상생협약(임대료동결 등) 등 안정화 추진
- (청년상인 모집) 참신한 아이디어, 창업의지·역량 등 성공 가능성 높은 청년상인을 경쟁방식을 통해 선정*
 - * 청년몰 조성 점포수의 1.5배수 내외로 선정하고 필요시 수시모집
- (홍보·사후관리 등) 붐조성을 위한 통합홍보, 청년상인 상인회 의무가입, 커뮤니티, 협업공간 등 스스로의 자생력 및 성과제고 등

3. 사업단 역할

- 사업계획 수립
- 청년몰추진위원회 운영 및 검토사항의 반영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보조금의 운영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의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 결과의 이전, 유지보수 및 성과활용 방안 제시
- 시설, 기자재 등 유무형의 결과물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 제공
- 시설, 기자재, 이벤트 등의 유무형의 사업 결과물 지자체에 인계
- 하자보수,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 동일권역 내 청년상인 육성사업 기지원 시장 사후관리

4. 사업추진체계



■ 사업 추진 단계별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체(기관)

낙시어선 전문 교육일정 변경 안내

2017년 낙시어선 전문교육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통합 관리하고 다음과 같이 더 알차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 △ 거점교육기관 10개소 지정, 교육일정 정례화 운영
- △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과 차별화된 교육 내용과 강사진 혁신
- △ 낙시전문 교육사이트 개설 및 전담 상담전화 마련

- 교육일정 및 수강신청 문의 : ☎1833-7139(한국어촌어항협회)

-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 네이버 및 휴대전화에서 '낙시전문교육'으로 검색 또는 검색창에서 'www.naksiedu.kr' 입력후 문자를 통하여 간단히 인증 진행후 신청

※ 교육신청→교육지역선택→낙시어선업자 및 선원 선택→교육일 선택

-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거나 법인인 경우 : ① ☎1833-7139

② '붙임 2'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505-742-1004로 전송

※ 교육대상자 명단에 없는 경우에는 수강등록처리가 불가하오니 수가신청자가 직접 해당지역 지자체로 연락하여 명단등록 요청

- 수강신청 결과 · 교육이수현황 확인 : 마이페이지 선택→신청현황 또는 이수현황 선택(PC화면에서는 이수증 출력 가능)



낚시어선 전문교육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2017년부터 낚시어선 전문교육은 낚시어선업자 뿐만 아니라 선원까지 교육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당초 (2014~2016년)	변경후 (2017년 이후)
교육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교육대상자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업자, 선원
교육형태	순회교육	집합교육
강사진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사원	대학교수 및 전문강사
교육신청방법	교육기관 전화 또는 팩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수강신청 ○ 교육기관 대표전화

- 낚시어선업자 및 사무장, 조리사 등 승선하는 모든 선원은 낚시어선 전문교육 대상자입니다.

수강신청 방법

-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낚시전문교육' 검색 후 사이트로 접속하여 본인 인증(문자로 승인번호 수신하고 확인) 후, 신청
- '낚시전문교육' 상담전화로 신청 ☎1833-7139

※ 낚시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원을 근무하게 한 낚시어선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하반기 낚시어선 전문교육 일정

● 교육 횟수 : 총 41회(집합 27회, 이동 14회)

교육기관	지역	교육장소(교육장 소재지)	교육 횟수	교육시기			
				9월	10월	11월	12월
계			41	7	9	11	14
인천대	인천-경기	인천대(인천 연수구)	4	21일(목)	19일(목)	23일(목)	21일(목)
한서대	충남	한서대(태안군)	3	28일(화)	31일(화)		19일(화)
		오천면사무소(보령시)	3			24일(금)	1일(금) 22일(금)
		장고항2리복지회관(당진시)	1				12일(화)
군산대	전북	전북대(군산시)	3		26일(목)	30일(목)	21일(목)
목포해양대	전남 (서부권역)	목포해양대(목포시)	3	29일(금)	27일(금)		22일(금)
		완도군민회관(완도군)	1			23일(목)	
전남대	전남 (동부권역)	전남대(여수시)	3	25일(월)		20일(월)	18일(월)
		남해유배문학관(남해군)	1		24일(화)		
경상대	경남	경상대(통영시)	3		20일(금)		15일(금) 22일(금)
		거제수협 고현지점(거제시)	1			24일(금)	
		마산수협(창원시)	1	15일(금)			
		진해청소년수련관(창원시)	1			17일(금)	
한국어촌 어항협회	부산	부경대(부산시)	2			10일(금)	8일(금)
한동대	울산-경북	한동대(포항시)	2		25일(수)		13일(수)
		정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울진군)	1			23일(화)	
강원 도립대	강원	강원도립대(강릉시)	2		19일(목)		14일(목)
		고성군문화원(고성군)	1	21일(목)			
		삼척시청(삼척시)	1			16일(목)	
제주대	제주	제주대(제주시)	2		13일(금)		15일(금)
		추자도수협 어민복지회관(제주시)	1	8일(금)			
		서귀포수협(서귀포시)	1			17일(금)	

※ 교육안내문 수취 및 수강신청 이후 교육일정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니, 낚시에듀(www.naksiedu.kr)사이트를 통해 교육일정 등을 확인
후에 수강신청 및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북권 교육장(위탁교육기관 : 군산대학교)

월	일	요일	시간	교육장소	주최	비고
10	26	목	18:00~17:00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1호관 1층 합동강의실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0(신관동 220-2)	유료*	김합
11	30					
12	21					

* 주차요금 1,000원(교육장내 할인권 배포)

③ 전남 서부권 교육장(위탁교육기관 : 목포해양대학교)

월	일	요일	시간	교육장소	주최	비고
9	29	삼	18:00~17:00	목포해양대학교 배사과학관 3층 세미나실 2315호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죽곡동 671)	무료	김합
10	27	삼		.		.
11	28	목		완도군민회관 1층 교육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거포로 111(가용리 50-05)		이동
12	22	삼		목포해양대학교 배사과학관 3층 세미나실 2315호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죽곡동 671)		김합

④ 전남 동부권 교육장(위탁교육기관 : 전남대학교)

월	일	요일	시간	교육장소	주최	비고
9	25	화	18:00~17:00	전남대학교 역수켄피스 수산해양관 1층 109호실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문석동 산86-1)	무료	김합
10	24	목		남해유림문화관 1층 다목적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남면리 555)		이동
11	20	화		전남대학교 역수켄피스 수산해양관 1층 109호실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문석동 산86-1)		김합
12	18	화		.		.

남시어선 전문교육 수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측시
신청인	수강인 구분	남시어선일자	<input type="checkbox"/> 해기사면허 소지	<input type="checkbox"/> 해기사면허 미소지	
		선 원	<input type="checkbox"/> 해기사면허 소지	<input type="checkbox"/> 해기사면허 미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남시어선 명칭	①	②	③	
	남시어선 신고확인증번호	①	②	③	
	어선번호	①	②	③	
	남시어선 신고지 시·군·구명				
* 2개 이상의 남시어선을 운영하거나 봉사하는 경우 모두 기재					
교육일정	교육일시		교육장소		

SMS 수신 및 정보제공 동의

'남시전문교육' 일일 안내 및 남시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운영하는 남시정보종합포털 '남시누리(www.naksinuri.or.kr)'를 통해 귀하의 사업장 정보를 남시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에 []하십시오.

남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82조에 따라 취와 길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교육기관 장 귀하

비고	1. 사진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수강인원을 제한하오니 해당 교육이 마감된 경우 다음 회차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주소지 외 타 지역에서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남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사본(남시어선업 교육신청자에 한정함) 2. 남시어선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남시어선업 교육신청자에 한정함)	수수료 없음